

의안 번호	1855	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2. 3.(금), 의회운영위원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4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의회운영위원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일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3조)
-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-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5조)
-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17조)
-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통합 운영(안 제18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경숙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